
2019회계연도 사업설명자료

2019. 1.

해양경찰청

사 업 명
토지대여료 (51-51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토지대여료	8	12	-	12	-	-	-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세입 개요

- 해양경찰청 소속관서 소관 국유재산(구내식당 토지 등) 사용료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수납액	14	17	8	10

사 업 명
건물대여료 (51-512)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건물대여료	367	207	-	367	-	160	77.2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세입 개요

- 해양경찰청의 소규모 보유건물 등 유허 건물대여 사용료
- 일선 해양경찰서 구내식당 및 매점 등 대여시 건물대여 사용료
- 해양경찰출장소 부지 등 유허 건물대여 사용료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수납액	230	337	367	473

사 업 명
기타재산수입 (54-545)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타재산수입	9	22	-	22	-	-	-

1.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20조(정부보관금 국고귀속조서의 송부) 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보관금이나 그 이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연도분을 정리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이를 소속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해양경찰청 및 각 해양경찰서 등 관서별 운용중인 통장 이자수입 등
- 기타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수입
-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 등 세입·세출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수납액	62	543	9	19

사 업 명
벌금 및 과료 (56-56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벌금 및 과료	6	416	-	30	-	△386	△92.8

1. 법적 근거

○ 경범죄처벌법 제7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아니한다.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해사안전법 제10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보호수역에 입역한 자
2. 제8조제3항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어망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통항에 영향을 주는 어구 등을 설치하거나 양식어업을 한 자
4.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공사나 작업을 한 자
5.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항행한 자
6.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거나 해상교통안전진단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을 시행한 자
7.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8.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한 자
 9. 제2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한 자(제24조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제34조제2항에 따른 방치 선박의 이동·인양 또는 어망 등 어구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35조제1항을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물러가지 아니한 자
 12.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을 위반한 자
 13. 제4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제4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자
 1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안전관리적합증서·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를 받은 자
 15.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대행업을 한 자
 16. 제59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17.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게을리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8.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3항·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해사안전법 제10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구조물을 제거하지 아니하거나 원래 상태로 복구하지 아니한 자
 - 2의2.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06조제18호 외의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3항·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해사안전법 제108조(벌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해사안전법 제10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3조부터 제10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입 개요

- 법 집행기관인 각 해양경찰서에서 개별법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 기초질서 등 위반행위에 대한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벌금, 과료 등의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수납액	67	21	6	1

사 업 명
과태료 (56-563)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과태료	212	258	-	160	-	△98	△38.0

1. 법적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7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3항 또는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 4의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한 자
 - 7의2.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8.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9.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11.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0.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1.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공간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2.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2의3.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의4.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한 자
 4.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의 사본 및 연료유건본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연료유공급서 사본 및 연료유건본을 제공한 자
 5. 제6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제조치의 협조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7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관리한 자 및 폐기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8. 제7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10. 제88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1.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12.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한다.
1.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대기오염방지 설비를 유지·작동한 자
 2. 제4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체 또는 단체 외의 자에게 인도한 자
 3.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한 자
 4. 제4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작동한 자

5. 제4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해역에서 주기관·보조기관 또는 보일러를 사용하여 물질을 소각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배출물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배출물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인받은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자
 4. 제31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 6의2. 제32조제3항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6의3. 제32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 등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게 하지 아니한 자
 - 6의4.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자
 - 6의5.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에 관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6의6.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작업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6의7. 제42조제4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설비의 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 6의8. 제42조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8의2. 제44조제5항에 따른 연료유전환절차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9.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 또는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0. 제4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건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제4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11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인 받은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자
12. 제5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3.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14. 제7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 수거확인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15. 제7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제7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자
18.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9.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해양환경관리법 제13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13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험업무 종사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를 위반하여 운항규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시간 외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6. 제24조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7.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8.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자
 9. 제36조를 위반하여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0.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11.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신고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12. 제50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수상레저사업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에 따른 일시정지나 면허증·신분증의 제시명령을 거부한 자
 4. 제32조를 위반하여 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 제35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수상레저기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유선및도선사업법 제43조(과태료)**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한 자
 2. 제13조제2항(제1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이 부과·징수한다.

○ **해사안전법 제110조(과태료)**

- ① 제37조를 위반하여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변조·훼손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8조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검사·확인·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거짓된 서류를 제출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로지정제도를 위반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14조제3항제4호 후단에 따른 유조선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자
 4. 제21조제2항(제5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양도 또는 합병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5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6조제2항에 따른 표시나 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자
 1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1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
 14. 제34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15.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5의2.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또는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아니한 자
 - 15의3.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장
 - 15의4.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 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 15의5.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 15의6. 제41조제4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16. 삭제 <2015.6.22.>

17. 제4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4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자
 19. 제49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0. 삭제 <2015.6.22.>
 21. 삭제 <2015.6.22.>
 22. 제63조부터 제68조까지, 제70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제96조에 따른 항행 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23. 제78조,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에 따른 등화와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24. 제91조부터 제95조까지에 따라 음향신호와 발광신호 등을 갖추어 두는 것과 그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25. 제106조제17호 외의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게을리 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 **해양경비법 제22조(과태료)**
-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 세입 개요

- 법 집행기관인 각 해양경찰서에서 개별법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 기초질서 등 위반행위에 대한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과태료 등의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수납액	112	165	212	168

사 업 명
징계부과금 (56-564)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징계부과금	24	19	-	24	-	5	26.3

1.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과금)

-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⑤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계부가금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징계부가금)

- ① 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② 징계위원회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 ③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법 제 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등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⑥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행,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공무원 비리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징계부가금 제도는 금품 및 향응수수(授受), 공금 횡령·유용 비위의 경우 징계처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액·유용액등의 5배 이내 징계부과금을 부과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수납액	6	6	24	16

사 업 명
변상금 (57-57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변상금	1,201	466	-	880	-	414	88.8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이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② 제1항의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經緯),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47조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 ①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방제조치를 직접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안의 자갈·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름이 하나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 해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기름이 둘 이상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 이 경우 기름이 둘 이상의 시·도지사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관할 시·도지사도 한다.

3. 군사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해안에 대한 방제 조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
-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방제에 사용되는 자재·약제, 방제장비,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4항에 따라 부담하게 한 비용의 징수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2. 세입 개요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해양오염 사고 시 국가가 선조치에 따른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 등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수납액	2,562	1,210	1,201	2,679

사 업 명
위약금 (57-572)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위약금	888	733	-	800	-	67	9.1

1.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6조(지체상금)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금으로 불특정하게 발생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체상금의 예산액 추계가 어려운 실정임.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수납액	730	1,480	887	337

사 업 명
가산금 (58-58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가산금	1	12	-	12	-	-	-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73조(연체료등의 징수)

-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 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중앙관서의장 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일반재산의 경우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직접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등은 그 사무를 집행할 때 위임한 중앙관서의 장의 감독을 받는다.
 2.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등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세입 개요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부과징수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수납액	1	4	1	4

사 업 명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타경상 이전수입	1,101	570	-	1,101	-	531	93.2

1. 법적 근거

○ 보조금관리법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국고금관리법 제29조(지출금의 반납)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국고보조 및 위탁사업 정산 집행잔액, 과오지급금 회수, 호봉재확정 관련 급여지급금 환수 등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수납액	1,350	8,064	1,101	1,842

사 업 명
면허료 및 수수료 (65-65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면허료 및 수수료	347	560	-	330	-	△230	△41.1

1. 법적 근거

- 2018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세입과목 구분』
- 면허, 허가, 인가 및 증명발급에 수반되는 수수료 및 기타수수료 입학 또는 고시수수료

2. 세입 개요

- 경찰공무원등 채용시험 인터넷접수 응시 수수료
- 수상레저 면허관련 응시료, 갱신료등 수수료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수납액	303	334	347	300

사 업 명
기타잡수입 (69-69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타잡수입	736	578	-	650	-	72	12.5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5조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 물품관리법 제36조(매각)
 - ①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물품 중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으로서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물품관리법에 근거한 불용결정품 매각대금(고철, 폐유 등)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수납액	390	637	736	689

사 업 명
기계기구매각대 (71-712)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계기구 매각대	10	113	-	30	-	△83	△73.5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제40조(용도폐지)

- ①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다.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유재산법제48조(매각)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각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문화시설·공원 등 공공사용을 목적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특별회계나 기금 소관 재산으로 그 회계나 기금의 설치목적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재산의 위치·규모·형태나 정책목적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 국유재산법제50조(매각대금의납부)

-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2. 세입 개요

- 용도 폐지된 공용차량 등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용 중인 인터넷 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하여 전자입찰 매각대금(차량, 불용물품 등)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수납액	25	15	10	19

사 업 명
기타고정자산매각대 (71-713)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타고정 자산매각대	225	520	-	480	-	△40	△7.7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제40조(용도폐지)

- ①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다.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유재산법제48조(매각)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각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문화시설·공원 등 공공사용을 목적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특별회계나 기금 소관 재산으로 그 회계나 기금의 설치목적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재산의 위치·규모·형태나 정책목적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 국유재산법제50조(매각대금의납부)

-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2. 세입 개요

- 용도 폐지된 공용차량 등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용중인 인터넷 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하여 전자입찰 매각대금(차량, 불용물품 등)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수납액	208	38	225	194

사 업 명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300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01	300
명칭	구조안전활동	구조안전활동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4,117	4,229	-	6,702	-	2,473	58.5

4. 사업목적

-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파출소·출장소 구조물품 및 행정경비 지원
- 연안해역(해수욕장) 안전관리 운영비 및 물품 지원
- 선박 출입항신고 자동화에 따른 어민 편의 증진, 각종 해양사고 및 범죄의 예방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V-PASS 시스템 구축·관리
-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한 기동점검단 운영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연안체험활동 안전점검) 등
- 해사안전법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출항·입항 신고)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수난구조의 관할)
- 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② 추진경위

- '05. 4월 속초 황만호 월선 관련 음주측정 장비 보강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충돌 등 해양사고 사전예방)
- V-PASS 관련 '06. 12월부터 인천·속초 지역에서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시범운영
국회 국정감사 정책제언, 국민권익위 및 합참 확대 구축 요청
- '14. 5월 「연안사고예방법」 제정에 따른 연안 안전관리
- '17년 12월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관련 대통령 해경의 현장 구조역량 강화
지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구입계획 수립 → 조달요청 → 입찰공고 → 계약 → 납품 → 파출소·출장소 운용

사 업 명						
수색구조역량강화 (300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01	301
명칭	구조안전활동	구조안전활동	수색구조역량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응자	국고보조율(%)	응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19,543	5,526	-	5,065	-	△461	△8.4

4. 사업목적

- 구조장비 확보, 수색구조 합동훈련, 대내외 수색구조협력 체계 구축 등 수색구조역량강화를 통해, 해양사고·재난에 대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수난구조를 위한 종사명령 등)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수상구조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5조(재난대비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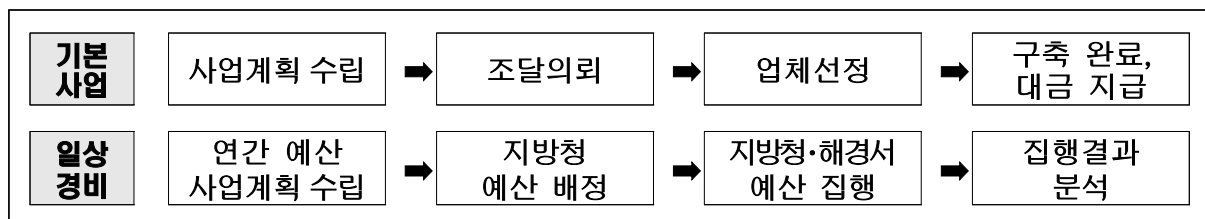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수색구조역량강화) 해양현장의 구조·구난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효율적이고 신속한 선진 해양사고 대응체계 구축
- (안전혁신마스터플랜) 54차 국무총리 주재로 심의확정(해경 현장대응능력 및 인프라 확충)
- (인접국간 협력) 인접국간 수색·구조 훈련 등 국제 협력 강화로 재외 국민 보호
- (SAR 협약 : Search and Rescue) 수색 및 구조의 협력과 조정을 위해 국가간 협력 권장
- (SOLAS 협약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해상 인명 안전 협약 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수상레저관리 (300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01	302
명칭	구조안전활동	구조안전활동	수상레저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수상레저관리	890	864	-	924	-	60	6.9

4. 사업목적

-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수상레저스포츠 진흥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의 체계적인 관리
- 수상레저 사고예방을 위한 수상레저 활동자 및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② 추진경위

- 수상레저활동 인구 증가에 따라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제정(법률 제5910호, '99.2.8)

* '00년도 조종면허시험 시행, '06년 조종면허증 갱신 및 수상안전교육제도 도입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

연간 조종면허시험 계획·공고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시험공고 → 응시 원서 접수(인터넷, 우편, 방문 등) → 필기시험 집행
→ 실기시험 집행 감독(시험대행기관) → 수상안전교육 → 면허증 발급(해양경찰서)

<수상레저 안전관리>

안전관리계획 수립 → 지방해양경찰청 및 광역자치단체 등 내·해수면 안전관리 현황
파악 → 수상레저 안전점검 및 지도방문 → 연간 안전관리 실적 분석 및 정책 반영

<수상레저기구 등록>

안전검사 신청(검사대행기관) → 안전검사교부 → 책임보험가입 → 등록신청(소유자
주소지 시·군·구) → 등록증 및 번호판교부 → 번호판부착

사 업 명						
연안구조장비도입 (300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02	300
명칭	구조안전활동	구조안전인프라	연안구조장비도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연안구조장비도입	22,329	15,570	-	19,470	-	3,900	25.0

4. 사업목적

- 「週 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해양여가 활동인구 증가에 따른 연안해역 안전한 해양활동 보장 및 신속한 해상재난 구조능력 제고를 위한 연안해역 구조장비 확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해수면에서 수난구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운영하고,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소방관서가 설치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6조 해상에서의 긴급구조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추진경위

- '05년 5월 화성 입파도 레저보트사고(7명 사망)로 연안해역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 '05년 제33회 국무회의 시 대통령 보고 및 사업 추진
- '14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현장 대응능력 강화 과제
- '17년 12월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관련 대통령의 해경 현장 구조역량 강화 지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사업계획 수립 → 일상감사(해양경찰청) → 계약요청(해양경찰청→조달청) → 계약체결(조달청) → 연안구조정 등 건조, 제조(계약자) → 준공·납품(검사) 및 인수(계약자→해양경찰청)

사 업 명						
VTS구축운영 (300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경비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02	301
명칭	구조안전활동	구조안전인프라	VTS구축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VTS구축운영	32,208	15,394	-	21,140	-	5,746	37.3

4. 사업목적

- 항만 및 연안해역의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해상교통관제 (VTS)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 해사안전법 제36조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
- 해사안전법 제44조 (항행보조시설의 설치와 관리)

② 추진경위

- 부총리 주재 해양오염방지대책 회의에서 『해상교통관제장비의 현대화』 추진계획 협의('90.8.2)
- 포항항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설치, 운영개시('93.12월)
 - * ('93)포항, ('96)여수(광양)·울산, ('98)부산·인천·마산·대산·평택, ('99)동해·군산·목포·제주, ('04)완도, ('05)부산신항, ('06)진도연안, ('11)경인, ('12)여수연안, ('14)통영연안, ('18)경인·태안연안 등 20개 VTS 개국
- 총리 주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설치계획』 확정('94.2.8)
- 『해양오염종합방지대책』 중점추진 과제(당정회의, 총리실)('95.10월)
- 총리실,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를 “특정과제”로 선정, 평가실시('08.3~7월)
- 연안 해상교통관제 확대 구축업무 舊해양경찰청으로 이관 결정('08.7월)
- 해양경찰청, ‘연안VTS 확대구축 중장기계획’ 수립('12.2월)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연안·항만VTS 업무 국민안전처로 통합('14.11.19)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VTS 업무 해양경찰청으로 이관('17.7.26)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93 ~ (계속)
- 사업규모 : 항만 VTS 15개소, 연안 VTS 5개소에 레이더, 관제운영콘솔, 통신 장비 등 구축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선박회사, 항만이용자, 선박운항자,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요구(지방해양경찰청) → 예산검토 및 배정(해양경찰청)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발주 (이하 지방해양경찰청) → 입찰 및 장비구매 → 계약체결 → 설치공사 → 구축완료

사 업 명						
통신위성장비관리 (3002-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02	302
명칭	구조안전활동	구조안전인프라	통신위성장비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신위성장비관리	12,857	14,639	-	15,960	-	1,321	9.0

4. 사업목적

- 통신·항해장비 유지관리 및 노후장비 교체, 부족장비 보강으로 원활한 경비 작전 임무수행
- 위성통신망 운용관리를 통해 모든 해역 경비함정 효율적인 통신서비스 지원
- 신속한 수색구조 임무수행을 위한 조난위성 통신장비 유지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조난통신의 수신① 해상구조 조정본부의 장은 조난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갖추고 조난사실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항상 조난통신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전파법 제25조 무선국의 운용제25조(무선국의 운용)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해양경찰청 국제안전통신센터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구축으로 해상 수색 구조 역량 강화 및 국민 해상안전 확보
- 해상치안 확립 및 해상조난 대응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신장비 기능 향상과 지속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
- 경비구역이 영해에서 200마일 구역으로 확대, VHF 지휘통신망의 소통권 제한으로 통신권 확보 곤란, 모든 해역 경비 임무수행을 위한 위성통신망 운영
- 확고한 해상치안 확립 및 해상조난구조 통신 임무수행을 위한 통신유지관리
- 통신장비 현대화로 해양주권수호를 위한 경비능력 향상 및 신속한 해상재난 대응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 직원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소요판단 → 세부추진계획 작성 → 일상감사(1억이상) → 계약의뢰→ 계약체결 및 시공 → 검사 및 완공(구매완료)

사 업 명						
함정건조 (310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1	300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장비도입	함정건조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함정건조	130,885	126,054	-	121,459	-	△4,595	△3.6

4. 사업목적

- 독도·이어도 경비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한 함정도입 및 함정탑재 고속단정 교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11년, '14년 '불법조업 외국어선 근절 조업대책'에 따라 대형함정 및 고속단정 교체사업 추진
- '16년 조선경기 활성화를 위해 3000톤 경비함 등 19척 추경사업 반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19년(신규증강 6척, 노후대체 30척(고속단정 9대 포함))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편성 → 건조계획 수립 → 조달계약(조달청) → 건조 → 인수 및 배치

사 업 명						
항공기도입 (310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1	301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장비도입	항공기도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항공기도입	35,066	21,012	-	21,807	-	795	3.8

4. 사업목적

- 해양재난사고 발생시 골든타임(1시간) 내 신속한 상황대응 체제 유지 등 구난체계 구축
- 독도·이어도 및 가상 EEZ해역까지 실질적인 해·공 입체적 경비에 필요한 항공세력 확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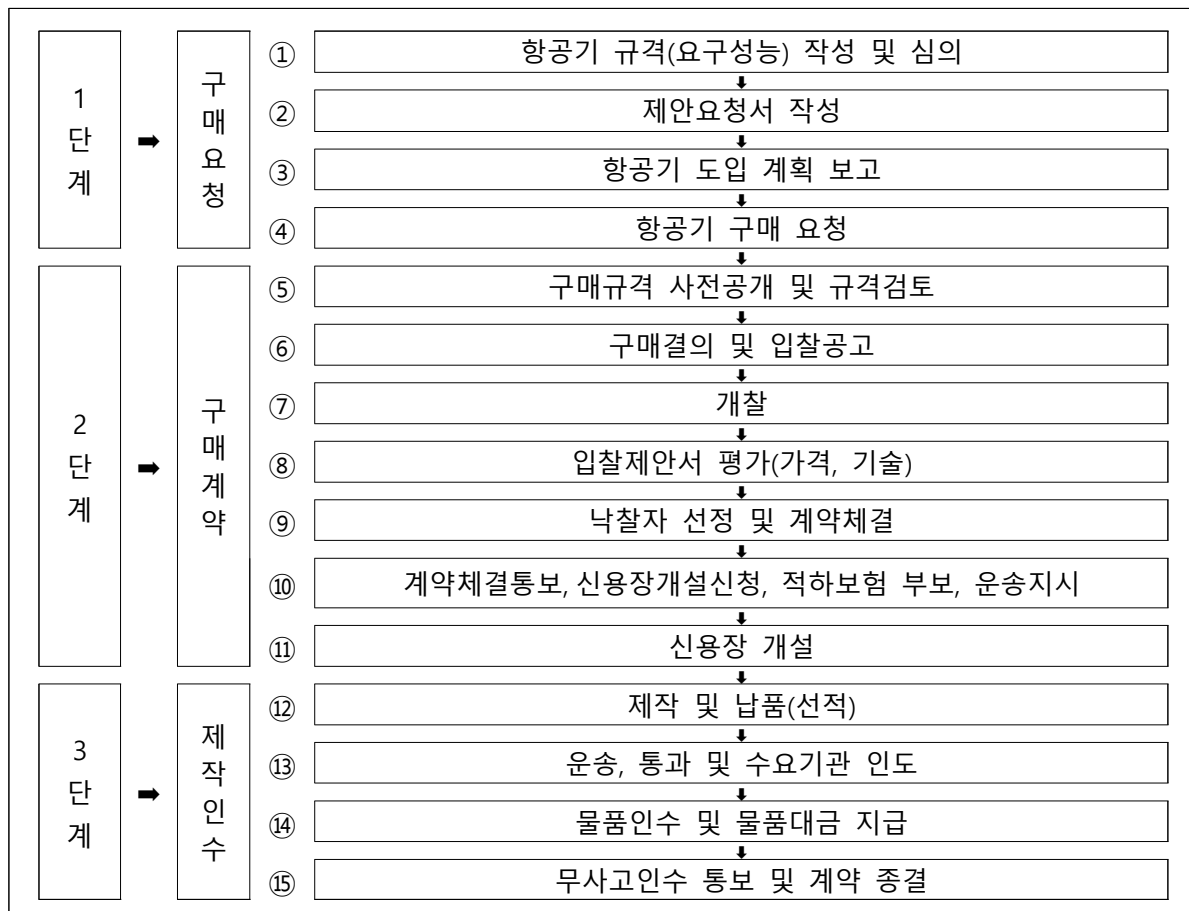
- 해양경비법 제2조(정의)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3조(수난구조의 관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장 제55조(재난대비 능력보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장 제56조(해상에서의 긴급구조)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1세기 해상치안 역량강화를 위한 최적 항공기 도입방안 연구용역('07.8월)
 - 해양사고 대응 및 해상안전 관리를 위한 「해양경찰 장비증강 목표기획서 수립」 ('15.12월)
 - 노후헬기 수명 및 운영관리 연구용역('17.6월)
 - 극우단체 독도 상륙기도, 해양탐사선 해저지형 탐사 시도 저지 등 독도주권 수호 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항공기 54대 도입 목표(2031년도 까지 발주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도주민, 해양레저 활동자, 해양종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경비대테러역량강화 (3102 -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경비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2	300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경비수사활동지원	경비대테러역량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경비대테러역량강화	4,173	6,824	-	5,966	-	△858	△12.6

4. 사업목적

- 독도·이어도 및 EEZ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경비체계 구축
- 어업자원 보호를 위한 우리 수역 내 불법조업 외국어선 감시·단속활동 강화
- 해상테러 예방진압, 해상경호임무,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등 대테러 역량강화를 위한 장비구매 및 해난사고 발생 시 즉각 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특공대 운영
- 대북관련 업무 및 국가위기관리, 통합방위 등 국가 보위 업무수행
- 각종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대응체제 확립을 위한 상황관계 시스템 구축 및 상황실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경비법(법률 제11372호) 제 7조 (해양경비활동의 범위) 해양경찰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경비 활동을 수행한다
 1. 해양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2. 해양오염 방제 및 해양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
 3. 해상경호, 대테러 및 대간첩작전
 4. 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
 5.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6. 그 밖에 경비수역에서 해양경비를 위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 영해및접속수역법,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 행사에관한법률
-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 훈령 제223호) “해양경찰청이 해양테러의 주무기관으로 지정”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124호)에 따른 「해양테러대응실무 매뉴얼」 주관 기관
- 비상대비자원관리법(법률 제9571호)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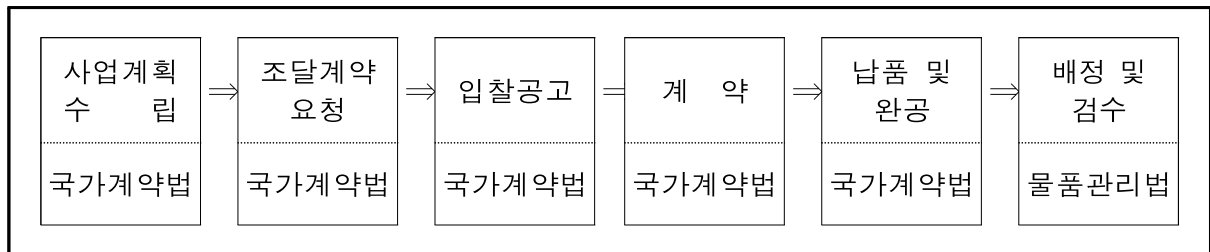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96년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후 인접국과 시급한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업협정 체결('99년 한·일, '01년 한·중)
- '01년 특수구조대 창설 후 서해훼리호 침몰 등 대형재난에 적극 대응
- '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부터 해상경호의 중요성 인식, 해양경찰만의 독자적인 해상경호 체계 구축·운용
- '08. 10. 2. 대통령 지시사항 “중국의 불법조업어선 단속과 관련하여 사람이 다치지 않는 단속방법에 대한 연구의 검토 및 해경의 장비보완, 사기를 진작 하도록 할 것”
- '11. 12월 국무총리실 주관 정부 종합대책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발표
- '11. 12월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경찰관 안전확보 지시, 장비 인력보강과 함께 자체 훈련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 강구”
- '16. 10월 정부합동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발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범죄수사활동 (310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2	301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경비수사활동지원	범죄수사활동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범죄수사활동	2,645	4,478	-	4,915		437	9.8

4. 사업목적

- 해양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은밀·광역화 되어가고 있는 해양범죄 수사활동 강화
- 해양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해양 과학수사 기법 연구·개발 및 과학수사장비 보강으로 증거주의 수사역량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형사소송법(법률 제13720호)
- 경찰관직무집행법(법률 제15565호)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 정부조직법(법률 제15624호) 제43(해양수산부) 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② 추진경위

- 1962. 05. 05 범죄수사권 부여(범죄수사활동 실시)
- 1969. 09. 20 해양경찰대 정보수사과 신설
- 2008. 12. 23 형사과(형사마약계, 광역수사팀, 마약반) 신설
- 2011. 01. 24 수사과 내 과학수사계 신설
- '14. 11. 19.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국 해상수사정보과 신설
- 2017. 07. 26.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해양경찰청 수사과, 형사과 신설
- 해상치안확립을 위한 지속적 사업으로 대국민 고객위주의 치안활동 전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수사활동 지원>

지방청, 경찰서별 소요예산 파악 → 지방청 예산재배정 → 사건수사비 등 사용 계획서 작성(부서장 결재) → 정부구매카드 사용(원칙) → 사건수사비 정산(영수증 첨부 및 부서장 결재)

<수사장비 확보 유지>

지방청, 경찰서별 수요조사 → 과학수사장비 및 시스템 도입 계획 수립 → 조달청 구매의뢰 → 계약 → 물품 동비 → 납품 검사 검수 → 관서별 배정

사 업 명						
국제외사활동 (3102-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	-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2	302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경비수사활동지원	국제외사활동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국제외사활동	1,499	1,822	-	1,740	-	△82	△4.5

4. 사업목적

- 밀수, 밀입국 등 국제범죄 단속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범처리
- 주변국 해양치안기관과 교류 협력 및 국제회의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 밀항단속법 제3조 (밀항, 이선 등)
- 영해및접속수역법 제5조 (불법어로)
-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5조(어업의 허가 등)

② 추진경위

- '05. 7. 22. 국제협력관 신설
- '08. 3. 10. 정보수사국 외사과 신설
- '14. 11. 19. 정부조직개편으로 국민안전처 신설(해상수사정보과 외사계)
- '16. 1. 18. 지방본부 국제범죄수사대 신설
- '17. 7. 26. 정부조직개편으로 해양경찰청 신설(수사정보국 외사과, 국제협력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경비> 매월 기본운영비 및 각종 국제행사 주최·참가에 따른 예산집행 <민간위탁사업비> 계약의뢰 → 공고 → 입찰 → 계약 → 위탁관리 → 집행

사 업 명						
함정정비유지 (310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3	300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정비지원	함정정비유지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함정정비유지	15,972	10,966	-	11,928		962	8.8

4. 사업목적

경비함정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 시행으로 최상의 함정성능을 유지하고
차질 없는 계획·예방정비로 함정가동률 향상을 통한 해상경비 임무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정부조직법 제43조 해양수산부제43조(해양수산부)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 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③ 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 국유재산법 제8조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처분한다
- 물품관리법 제23조 물품의 정비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고 그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달청장이 정한 정비기준이 있으면 이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비기준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EEZ, 대륙붕 등 해양 영유권을 둘러싼 주변국과 이해관계 상충, 독도 및 이어도 해역에서 국가간 비군사적 마찰·갈등 가능성 상존, 함정 전력증강 사업에 따른 대형함정 증가 및 연안구조장비 도입 등으로 정비 인프라 확충 필요성 대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함정 333척, 바지류 27척, 연안구조장비 254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흐름도	주기	주요내용	비고
예산확보	년	○ 장비관리 중기 재정계획에 의한 예산요구 및 확보	-
↓			
함정수리 관련 기초자료 조사	분기	○ 함정별 운항실적, 엔진상태 ○ 해역별 치안수요(해역별 함정배치, 계절별 치안수요 등)	장비별 운용 시간 분석
↓			
수리우선순위 결정	년	○ 수리예산, 경비함정 노후도 반영 ○ 해경서별 경비함정 세력 등 고려	-
↓			
수리지원 범위 협의	년	○ 해경 정비창, 해군 정비창 수리지원 및 정비척수 결정 ○ 수리 지원장비 협의	수리담당 실무자 협의
↓			
연간계획 수립	년	○ 본 계획 : 당해 연도 즉시 시행 ○ 예비계획 : 차기 연도 예산 확보자료 활용	2개년

사 업 명						
항공기정비유지 (310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3	301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정비지원	항공기정비유지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항공기정비유지	28,938	31,277	-	26,845	-	△4,432	△14.2

4. 사업목적

- 해양에서의 국민 안전과 구조 대응 태세를 위한 항공기 가동률 향상을 위한 항공기 검사정비 및 부품확보
- 해양경찰 보유 항공기 운용을 위한 항공유 확보(항공유, 윤활유, 잡유 등)
- 항공기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장비 확보(검사장비, 구조장비 및 지원장비 등)
- 항공요원의 완벽한 임무수행을 위한 직무교육(국내, 국외교육) 및 항공보험료 확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항공안전법(법률 제 15326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가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법률 제 14116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법률 제 14116호) 제2조의 2(경찰용·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이 법의 감항인증에 관한 규정은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에 준용한다.
-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해양경찰청훈령 제4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② 추진경위

- 해양경찰 보유 항공기 24대(비행기 6, 헬기 18)의 신속하고 안전한 해상치안임무 수행을 위하여 계획정비, 부품구매·수리, 제작사 기술회보 수행 및 상태결함 해소 등
- 해양경찰 보유 항공기 24대의 해상 치안임무 수행을 위하여 항공유류 확보
- 항공요원 직무교육비(국내, 국외교육) 및 항공기 보험료 등
- 공항 격납고, 계류장 및 활주로 등 토지임대료
- 항공정비관련 국내외 출장여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수용비 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항공기 24대(항공기6, 헬기18) 정비유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해양관련종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항공정비 >

- 항공기 정비 연간 소요량 책정 → 항공기 정비계획수립 → 연간 외주정비 용역 계약 체결 → 항공기 정비수행 → 검사 → 정비업체 대금청구 → 대금지급

< 부품·장비구매 >

- 항공기 부품·장비 소요량 책정 → 부품·장비 구매계획수립 → 계약체결 → 물품납품 → 물품검수 → 계약업체 대금청구 → 대금지급

< 항공유류 >

- 연간 항공유 소요량 책정 → 항공유 단가계약 계획수립 → 지역별 항공유 공급단가 계약체결 → 국제법에 의거 단가조정 → 항공기 비행 → 항공유 수급 → 공급 업체별 대금청구 → 대금지급

*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물품관리법, 해양경찰항공운영규칙, 항공기제작사 매뉴얼

사 업 명						
차량정비유지 (3103-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3	302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정비지원	차량정비유지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차량정비유지	2,780	2,752	-	2,614	-	△138	△5

4. 사업목적

- 장기사용(내구연한 초과), 과다운행 등 노후차량에 대한 교체 및 시설장비유지 · 유류비 등 수요에 맞는 운영비 집행으로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실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영은 각급 행정기관이 관리·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차량 및 대통령경호처의 차량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경찰차량 관리규칙 제2조 차량의 배치 경찰차량은 다음 각호의 해양경찰기관에 배치한다. 1.해양경찰청 2.해양경찰교육원 3.지방해양경찰청 4.해양경찰서 5. 해양경찰정비창 6.파출소, 출장소 7.그 밖의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 및 부서
- 경찰차량 관리규칙 제8조 정비 및 수리장소 경찰차량의 정비와 수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정비업의 종류에서 규정한 정비시설이 완비된 정비업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원활한 해상치안 업무 수행 및 기동력 확보를 위한 노후차량 대체 지원
- 해안가 운행 및 순찰로 인한 염분부식, 차량수명 단축
- 장기사용으로 수리·정비 수요증가 등 노후 순찰차 우선 교체
 - * 해안가 위주 배치된 순찰·구조차량의 차체부식으로 인한 교체 필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항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차량구매>

구매계획 수립(증차, 교체) ⇒ 구입계획수립 ⇒ 일상감사 ⇒ 조달계약 ⇒ 인수·배정

<차량운영>

차량 유지비 연간 소요비 책정(예산배정) ⇒ 정비(차량수리), 유류, 소모품 등 구매계획 ⇒ 수리의뢰 및 구매계약 ⇒ 수리 및 납품검수 ⇒ 대금지급

사 업 명						
해양경찰 서부정비창신설 (3103-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3	303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정비지원	해양경찰서부정비창신설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서부정비창신설	-	-	-	2,818	-	2,818	순증

4. 사업목적

- 경비함정 증가에 따른 현 정비창 수리 수용한계 초과와 대형함정 상가시설 부재에 따른 정비인프라 부족 해소를 위해 대형함정과 서·남해를 전담하는 제2정비창 신설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정부조직법 제43조 해양수산부제43조(해양수산부)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 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 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다.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 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③ 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 국유재산법 제8조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처분한다
- 물품관리법 제23조 물품의 정비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고 그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달청장이 정한 정비기준이 있으면 이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비기준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지역공약(전남도, 목포에 해경 제2 정비창 유치, '17.5.26) 사항으로 사전 타당성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 추진 결정
- 정비창 개창('94년) 이후 치안수요 증가에 따른 대형함정 및 보유함정의 증가 등으로 함정수리 부하율 가중으로 정비 인프라 확충 필요성 대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서부정비창 신설 설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전담 추진체계를 구성 사업진행

사 업 명						
함정유류관리 (3104-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4	300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보급지원	함정유류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함정유류관리	75,514	83,673	-	95,558	-	11,885	14.2

4. 사업목적

- 해경 경비함정 운항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유류를 적기에 공급하여 경비 함정의 해상주권수호 및 해양오염 방제활동 등 원활한 임무수행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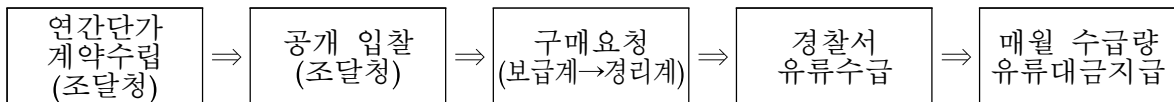
- 법령상 근거
 - 함정운영 관리규칙(해양경찰청훈령 제57호) 제39조(유류확보), 제40조(유류 소모기준), 제41조(유류공급)
- 추진경위
 - 해상치안 수요 증가 및 전력증강 사업에 따른 보유 함정증가 및 대형화 추세에 따라 유류 소모량 증가
 - 해양사고 사전 예방활동 및 사고 대응을 위한 유류 적기 공급 필요성 대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절차도



- 계약방식 : 매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조달청 단가계약 체결

사 업 명						
합정보급관리 (3104-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4	301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보급지원	합정보급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합정보급관리	6,008	5,834	-	5,624	-	△210	△3.6

4. 사업목적

- 합정운영에 필수적인 소모품·비품, 엔진·발전기 부속품, 정비용 페인트, 정수 물품 관리, 공기부양정 스커트 등 합정 364척 가동을 위한 유지비 확보 및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물품관리법 제15조 물품수급관리계획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별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각 중앙

관서의 장은 제1항의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그 소관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물품수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물품관리법 16조 물품의 정수관리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책정기준(定數策定基準)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관 주요 물품의 정수책정기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물품관리법 23조 물품의 정비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고 그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달청장이 정한 정비기준이 있으면 이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비기준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함정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물품 지속 확보로 원활한 보급체제 구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연간 소요예산 요청(소속기관) → 관서별 소요예산 확보 및 배정(본청) → 연간 예산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소속기관)

사 업 명						
급대여품관리 (3104-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4	302
명칭	해양경비및안전활동	보급지원	급대여품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급대여품관리	3,896	4,360	-	5,201	-	841	19.3

4. 사업목적

- 경찰관 및 의무경찰에 대한 경찰제복, 장구류 구매 지급으로 경찰관 품위유지 및 해상치안질서 확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경찰공무원법 제20조 복제 및 무기휴대①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③ 경찰공무원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2조 착용수칙①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제복(이하 "경찰제복"

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 제9조 특수제복의 차림① 특수제복의 차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각 호 중 일부의 착용이나 착장은 생략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제2조 급여품① 급여품의 종류·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③ 급여품은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피복, 침구, 경찰장구 수요조사 → 예산감안 구매계획수립 → 조달 구매의뢰 → 계약 → 물품제작 → 조달검사 → 납품검수 → 관서별 배정

사 업 명						
진압및전투장비관리 (3104-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4	303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보급지원	진압및전투장비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진압및전투장비관리	937	1,895	-	2,251	-	356	18.8

4. 사업목적

- 해상주권 확보 및 해상치안 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비함정에 소요되는 무기, 탄약, 진압장비 등을 적기 공급하여 전투력 유지 및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법률 제13825호)
 -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 경찰공무원법(법률 제12912호)
- 무기·탄약류 등 관리 규칙(해양경찰청훈령 제1호)
- 진압장비 등 관리규칙(해양경찰청훈령 제1호)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지시('06.6.8) : 「동해상 작전수행 능력 증강대책 및 한미 군사 지휘 관계 구상」 보고시
- 해경함정은 우발상황 발생시 임무교대를 보장할 수 있는 척수 확보
- 상황발생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40미리 자동포로 무장 강화
- 대통령 지시('11. 12. 27) : 「국토해양부 '12년 연두업무」 보고시
- 장비·인력 보강과 함께 자체 훈련을 통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 * '11.12월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중 인천해경서 3005함 故 이청호경사 순직사건 계기로 국무총리실 주관 해경청, 기재부, 행안부, 외통부, 법무부, 국토부, 농식품부, 국가보훈처 대책회의 결과 단속함정(대형함정 9척, 고속 단정 30대) 증강, 해상특수기동대 인력(102명) 보강, 단속장비 보강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경찰관 안전성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 마련 결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소요과약 → ②방위사업청 생산·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 ③구매계획 수립 → ④구매의뢰(경리계) → ⑤생산업체 생산 → ⑥국방기술품질원 품질보증 → ⑦ 납품

사 업 명						
함정계획정비 (42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정비창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31	301
명칭	정비창 운영	함정정비	함정계획정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함정계획정비	19,407	28,300	-	28,300	-	-	-

4. 사업목적

- 주기관(엔진) 제작사 정비기준에 따른 기관형별 엔진 분해수리로 함정성능 유지
- 연간 함정수리계획에 의거 정비창에 입창하는 함정 기본정비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정비창 기본운영규칙
- 해양경찰청 함정정비규칙

② 추진경위

- 주기관(엔진) 제작사 정비기준에 따른 기관형별 엔진 분해수리로 함정성능 유지
- 연간 함정수리계획에 의거 정비창에 입창하는 함정 기본정비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정비창에 입창하는 수리함정의 자재비 등 연간 241척의 함정수리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해양경찰정비창)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해경함정 승조원, 해수산 관련 종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연간 함정정비계획 수립(함정정비규칙) → 수리함정 입창 → 수리신청서 접수
→ 자체 예방검사 → 수리자재 확보 → 자체수리 또는 전문업체 외주수리

사 업 명						
정비창관리 (4231-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31	303
명칭	정비창 운영	함정정비	정비창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정비창관리	2,000	2,058	-	1,638	-	△420	△20.4

4. 사업목적

- 경비함정 수리업무 수행 및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지원
- 함정수리에 필요한 수리장비, 특수·일반 공구 및 책임운영기관 운영경비 지원
- 수리기반시설의 유지 보수로 안정적인 함정수리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칙
- 해양경찰청 함정정비규칙

② 추진경위

- '00년부터 정비창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운영되면서 운영경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책임운영기관 운영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해양경찰정비창)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해경함정 승조원, 해수산 관련 종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공공요금, 여비 등 기관 운영경비로서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

사 업 명						
본부인건비 (7201-1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1	100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인건비	본부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본부인건비	48,534	58,095	-	67,037	-	8,942	15.4

4. 사업목적

-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경찰관, 일반직, 연봉제) 보수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제1조(목적) 이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부터 별표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 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보수지급의 방법)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추진경위 : 소속공무원 인건비 지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 → 예산작성 → 사업계획수립 → 사업진행 → 집행결과분석

사 업 명						
지방관서인건비 (7201-1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1	101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인건비	지방관서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지방관서인건비	571,354	632,310	-	708,193	-	75,883	12.0

4. 사업목적

-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경찰관, 일반직, 연봉제) 보수지급
-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및 교육생 보수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제1조(목적) 이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부터 별표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 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보수지급의 방법)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추진경위 : 소속공무원, 간부후보생, 신입순경 및 의무경찰 인건비 지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 → 예산작성 → 사업계획수립 → 사업진행 → 집행결과분석

사 업 명						
정비창인건비 (7201-1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1	102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인건비	정비창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정비창인건비	13,177	13,913	-	15,201	-	1,288	9.3

4. 사업목적

-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경찰관, 일반직, 연봉제) 보수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제1조(목적) 이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부터 별표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 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보수지급의 방법) 보수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추진경위 - 소속공무원, 간부후보생, 신입순경 및 의무경찰 인건비 지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해양경찰정비창)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 → 예산작성 → 사업계획수립 → 사업진행 → 집행결과분석

사 업 명						
본부기본경비(총액) (7202-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2	200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관서운영기본경비	본부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본부기본경비(총액)	6,959	7,184	-	8,604	-	1,420	19.8

4. 사업목적

- 우수 전문인력 선발 및 양성을 위한 채용 · 교육 · 훈련 실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5조(시험의 방법) ①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신체검사 · 체력검사 · 필기시험 · 종합적성검사 ·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서류전형에 의한다. 다만, 시험 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②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마친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경위에의 채용시험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방법·합격자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승인을 얻어 경찰교육원장이 정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0조(「경찰공무원 임용령」 등의 적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적용한다.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0조(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이수의 우선순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9조(직장훈련의 성과측정)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제7조(직장훈련의 구분 등)

② 추진경위

- 인적자원개발에 초점을 둔 성실한 채용 및 승진 시험·심사 운용
-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대직무교육원 외국어 및 합정 전문교육
- 사회 각 계층의 저명인사 및 전문가를 초빙, 새롭고 다양한 지식과 견문 전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 및 승진 시험·심사 계획 수립 → 시험·심사 → 채용, 승진- 교육계획 수립 → 대상자 교육 → 직무복귀- 외래강사 초빙계획 수립 → 시행 |
|--|

사 업 명						
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7202-2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2	201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관서운영기본경비	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5,530	5,983	-	6,332	-	349	5.8

4. 사업목적

- 지방청 및 경찰서 기본경비(총액인건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② 추진경위

- 5개 지방청과 소속 19개 경찰서의 원활한 운영
- 근무직원의 매식비, 일·숙직근무 지원, 과 운영비 지급을 위한 경비 조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 → 예산작성 → 사업계획수립 → 사업집행 → 집행결과분석

사 업 명						
지방관서운영(총액) (7202-2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2	202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관서운영기본경비	지방관서운영(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지방관서운영(총액)	1,051	1,302	-	1,302	-	-	-

4. 사업목적

- 지방청 및 경찰서 기본경비(총액인건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② 추진경위

- 5개 지방청과 소속 19개 경찰서의 원활한 운영
- 근무직원의 매식비, 일·숙직근무 지원, 과 운영비 지급을 위한 경비 조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 → 예산작성 → 사업계획수립 → 사업집행 → 집행결과분석

사 업 명						
교육원기본경비(총액) (7202-2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2	203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관서운영기본경비	교육원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교육원기본경비(총액)	504	471	-	472	-	1	0.2

4. 사업목적

- 해양경찰교육원 교육훈련 운용의 효율적 지원으로 교육 능력 향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경찰공무원법 제17조 교육훈련
-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6조 교육훈련실시의무
-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8조 신입 · 기본 · 전문교육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 시보임용경찰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② 추진경위

- '04. 1. 29. 해양경찰학교 직제신설 공포(대통령령 제 18260호)
- '06. 1. 신입·기본과정 교육운영 일원화(경찰종합학교→해양경찰학교 이관)
- '08 ~ 경정·경감기본교육 이관(경찰대학→해양경찰학교)
- '13. 11. 11.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의거 해양경찰교육원 신축 이전(천안→여수)
- '14. 3. 31. 해양경찰교육원 준공
- '17. 7. 26. 정보조직법 개정으로 해양경찰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연간 교육훈련계획 의거 집행계획 수립 → 교육운영 경비 지출요구 → 기본경비 집행

사 업 명						
정비창기본경비(총액) (7202-2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2	204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관서운영기본경비	정비창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정비창기본경비(총액)	430	450	-	452	-	2	0.4

4. 사업목적

- 해양경찰정비창 수리시설 및 주요장비의 효율적 지원운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칙
- 해양경찰청 함정정비규칙

② 추진경위

- '53. 12. 23 : 해양경찰대 창설시 정비참모산하 함정계 '영선반' 설치
- '84. 1. 1 : 해양경찰대 정비보급과 '수리창' 설치
- '90. 7.19 : 해양경찰대 관리부 '정비창'으로 변경

- '94. 5.12 : 정비창 신축준공 이전(현재 위치)
- '00. 1. 1 : 책임운영기관으로 시행(5과 13계 체제로 운영)
- '14. 11.19 :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개편
- '17. 7.26 : 해양경찰정비창으로 개편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해양경찰정비창)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연간 함정수리계획 의거 지원계획 수립 → 함정수리 지원 지출요구 → 기본경비 집행

사 업 명						
본부기본경비 (7202-2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2	250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관서운영기본경비	본부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본부기본경비	2,807	2,813	-	2,654	-	△159	△5.7

4. 사업목적

- 우수 전문인력 선발 및 양성을 위한 채용·교육·훈련 실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제1조(목적)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5조(시험의 방법)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0조(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
-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9조(급식등) 및 제24조(교육훈련비의 지급)
- 선박직원법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및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② 추진경위

- 인적자원개발에 초점을 둔 성실한 채용 및 승진시험 운용
-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경비안전교육원 및 해양·경찰·군 교육기관 교육
- 해양·수산계열 고등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신입경찰관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훈련합 등 전문 해양 실습시설·장비 부족을 보완하는 해양경찰 전문성교육 강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 및 승진시험 계획 수립 → 시험 → 채용, 승진- 교육계획 수립 → 대상자 교육 → 직무복귀 |
|---|

사 업 명						
지방관서기본경비 (7202-2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2	251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관서운영기본경비	지방관서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지방관서기본경비	27,459	27,178	-	26,732	-	△446	△1.6

4. 사업목적

- 지방청 및 경찰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② 추진경위

- 5개 지방청과 소속 19개 경찰서 관서기본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 필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 → 예산작성 → 사업계획수립 → 사업집행 → 집행결과분석

사 업 명						
교육원기본경비 (7202-25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2	252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관서운영기본경비	교육원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교육원기본경비	659	1,045	-	1,013	-	△32	△3.1

4. 사업목적

-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운용의 효율적 지원으로 교육 능률 향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경찰공무원법 제17조 교육훈련
-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6조 교육훈련실시의무
-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8조 신입·기본·전문교육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 시보임용경찰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② 추진경위

- '04. 1. 29. 해양경찰학교 직제신설 공포(대통령령 제 18260호)
- '06. 1. 신입·기본과정 교육운영 일원화(경찰종합학교→해양경찰학교 이관)
- '08 ~ 경정·경감기본교육 이관(경찰대학→해양경찰학교)
- '13. 11. 11.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의거 해양경찰교육원 신축 이전(천안→여수)
- '14. 3. 31. 해양경찰교육원 준공
- '17. 7. 26. 정보조직법 개정으로 해양경찰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연간 교육훈련계획 의거 집행계획 수립 → 교육운영 경비 지출요구 → 기본경비 집행

사 업 명						
정비창기본경비 (7202-25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정비창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2	253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관서운영기본경비	정비창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정비창기본경비	12	12	-	11	-	△1	△8.3

4. 사업목적

- 해양경찰청정비창 수리시설 및 주요장비의 효율적 지원운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정비창 기본운영규칙
- 해양경찰청 함정정비규칙

② 추진경위

- '53. 12.23 : 해양경찰대 창설시 정비참모산하 함정계 '영선반' 설치
- '84. 1. 1: 해양경찰대 정비보급과 '수리창' 설치
- '90. 7.19: 해양경찰대 관리부 '정비창'으로 변경

- '94. 5.12: 정비창 신축준공 이전(현재 위치)
- '00. 1. 1: 책임운영기관으로 시행(5과 13계 체제로 운영)
- '14. 11.19: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개편
- '17. 7.26: 해양경찰정비창으로 개편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해양경찰정비창)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연간 함정수리계획 의거 지원계획 수립 → 함정수리 지원 지출요구 → 기본경비 집행

사 업 명						
의무경찰관리 (720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00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의무경찰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의무경찰관리	8,681	9,471	-	8,964	-	△507	△5.4

4. 사업목적

- 의무경찰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병역법 제25조 제1항 제2호(전환복무)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설치 및 임무), 제2조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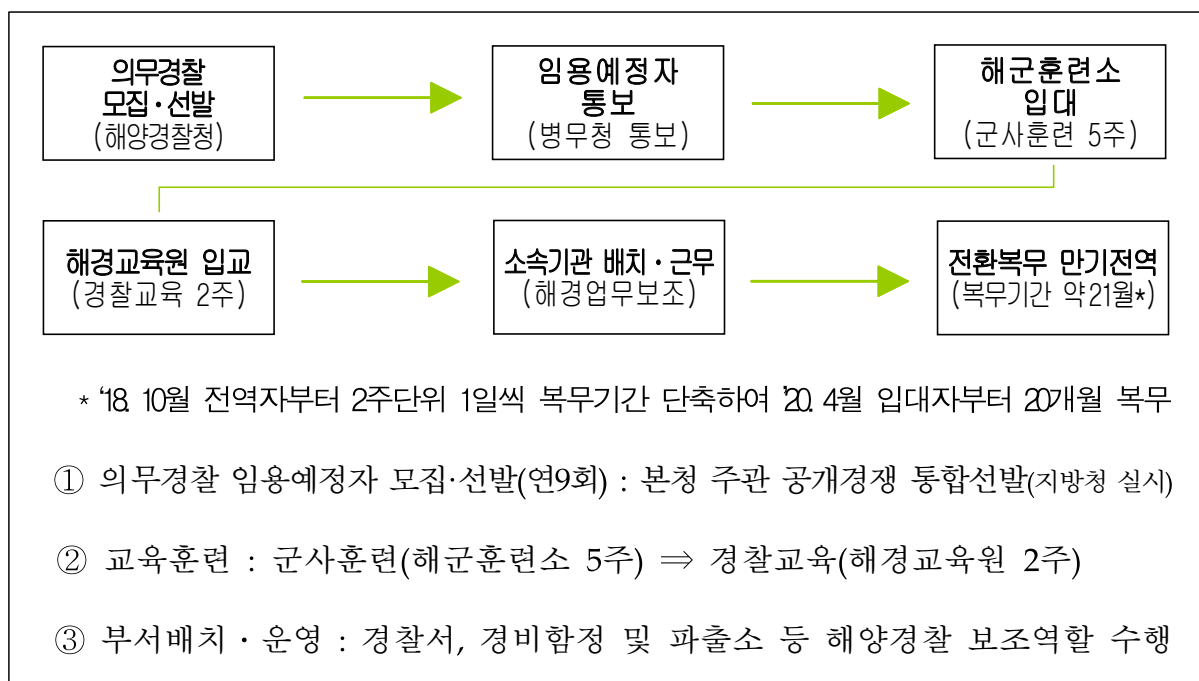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舊,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의거 1970년 이후 전투경찰순경을 운용하면서 대간첩 작전 수행과 치안서비스 지원을 위해 운용

6. 주요내용

- 사업규모 : '19년 의경 운용인력 : 2,303명(신규임용 1,300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총무활동 (720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01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총무활동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총무활동	3,312	2,278	-	2,217	-	△61	△2.7

4. 사업목적

-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 및 이행, 해양경찰 주요 정책 및 업무계획 수립·관리 등
-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 국회 대응 전반에 대한 지원
- 대국민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동참하는 해양안전문화 정착
- 해양경찰 조직·기구 관리 및 법령 제·개정 업무, 성과 관리 업무 추진
- 행정감사제도 운영 및 종합감사, 감찰활동 지원으로 기관청렴도 제고
- 민원 및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 청사관리, 행사·의전 등 해양경찰 업무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 경찰공무원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보안업무규정 제32조(보호구역), 제35조(보안측정)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국가·지자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국무총리 지시 2014-1호)
-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 제출요구)
-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대통령령 제24146호)
-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4장(언론의 취재지원 등) (대통령령 제24988호)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개정)
- 공직자 윤리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개정)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7.26. 개정)
- 감사원법(법률 제13204호, 2015.2.3. 개정)
-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27787호)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28215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83, 2016.5.29. 개정)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0조(대통령령 제28211호)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449호)
-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521호)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법률 제14839호)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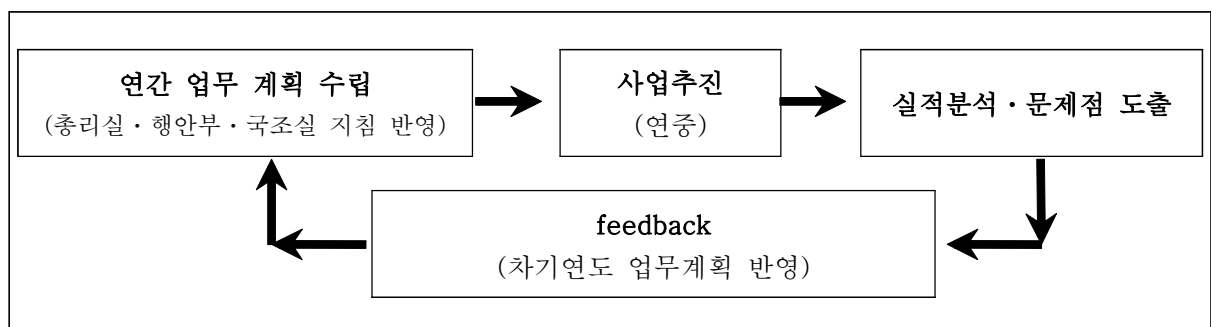
- '99년 대한요트협회와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창설
- '01년부터 국가대표 선발 겸한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 개최
- 「정책보도모니터링 시스템」 시행('04. 6. 1)
- 국무총리훈령 제462호 정책품질관리규정('05. 7. 1)
- 2009 정부업무평가 「정책소통 홍보」 시행('09. 4. 21)
- '13년 해양경비법 개정에 따른 해양경찰의날 법정기념일 격상
- 2017. 7.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국정목표, 전략, 과제 실현을 위한 감사·감찰 업무 실시(국민이 주인인 정부-투명하고 유능한 정부-적재적소·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2017. 8. 국내외 전체공관 '갑질'관련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해경청 갑질 전수 조사 및 갑질 내부 금지규정 마련, 청렴고충 신문고 개설 운영 실시
- 대통령 공약사항, 국정과제, 정책협의회, 재조해경 5개년 계획 수립 등 내·외부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에 필요한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 주요정책, 업무계획 수립, 백서발간, 통계사업 등 기획업무에 필요한 자료수집, 도서구입 등 부대경비
- 국회법 의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인쇄비, 국회출입 소요경비
- 조직 정체성 확보를 위한 해양경찰청 조직법 제정 및 우리청 소관 법령 제·개정, 체계적 입법관리 등을 위한 법무활동
- 해경청 대내외 소통 및 조직문화 개선업무 추진을 위한 성과관리 활동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소속공무원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복지역량강화 (7203-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02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복지역량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복지역량강화	5,612	5,671	-	4,812	-	△859	△15.1

4. 사업목적

- 해양경찰 전직원 복지지원을 위한 마음돌봄, 퇴직지원, 수련원, 특수건강검진, 직원숙소, 보육시설 이용의 효과적인 혜택 및 편의를 위한 유지·관리 등 복지역량강화 업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의료지원)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9조(직원숙소 지원)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복지시설등의 설치·운영)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1조(퇴직경찰관취업 등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보육시설등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14~ PTSD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우선대상자 및 희망자 선정 후 집중 마음돌봄*(심리상담) 실시
 - * 2018년도부터 심리상담 프로그램 명칭을 마음돌봄으로 변경함.
 - 2000~ 함정·안전센터·분석실 등 특수부서 야간(교대)근무자 특수건강검진 실시
 - ※ 야간(교대)근무자는 2015년부터 검진 실시
 - 2014~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대상 해양경찰 취업지원센터 운영
 - 1981~ 비연고 무주택자 직원숙소 지원 및 시설물 유지관리
 - 2010. 3. 2~ 직장내 보육시설 5개소 개원·운영(16년 1개소 신설)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민간경상보조(2018년 1,650백만원) 직장보육시설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 공무원 및 가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본청, 동·서·남·제주 지방청 어린이집 (푸르니, 모아맘)	50%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 → 예산작성 → 사업계획수립 → 사업집행 → 집행결과분석
- 사업계획 → 예산작성 → 사업계획수립 → 위탁업체공고·입찰·낙찰·선정
→ 위탁업체 계약 → 위탁사업집행 → 집행결과분석 → 위탁사업비 지급

사 업 명						
재정관리활동 (7203-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03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재정관리활동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재정관리활동	3,989	4,686	-	4,508	-	△178	△3.8

4. 사업목적

- 원활한 해상치안 업무수행을 위한 해양경찰 예산편성 및 배정
- 국유재산관리 및 재정성과관리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해당사항 없음
- ② 추진경위
 - 해양경찰 예산편성, 결산, 국유재산관리 및 재정성과관리 등 수행경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 예산작성 → 사업계획수립 → 사업집행 → 집행결과분석

사 업 명						
인재선발양성지원 (7203-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교육담당관실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04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인재선발양성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인재선발양성지원	983	1,207	-	1,179	-	28	△2.3

4. 사업목적

- 현장 대응역량을 갖춘 맞춤형 전문화된 교육 운영을 통해 해양경찰 소속직원의 직무역량 향상 및 행정발전을 도모
- 미래 해양경찰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찰관 승진업무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 경찰공무원법 제8조(신규채용)
- 경찰공무원법 제17조(교육훈련)

-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24조(교육훈련비 지급)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5조(시험위원의 임명)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4조(승진심사), 제26조(근속승진), 제27조(시험실시의 원칙)

② 추진경위

- 교육원, 지방교육센터 신설 등에 따른 현장 중심형 인재양성 강화
- 공무원의 자기학습 지원, 승진대상자의 객관적인 역량평가 필요
- 우수인재의 공정한 선발을 위한 효율적·체계적인 채용업무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해양경찰관(교육대상자)

7. 사업 집행절차

(교육분야) 연간교육훈련계획 작성 → 교육대상자 선정 → 교육실시 → 직무복귀
 (채용분야) 채용계획 작성 → 인력채용 → 교육·훈련실시 → 현업 직무수행

사 업 명						
치안및외근활동지원 (7203-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05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치안및외근활동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치안및외근활동지원	31,670	33,800	-	35,563	-	1,763	5.2

4. 사업목적

- 최일선 대민접점 근무 경찰관 대민봉사 및 민생치안업무수행을 위한 활동비
- 함정요원의 사기진작 및 지휘, 통솔력 강화를 위한 함정지휘관 품위유지비
-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정이하 경찰관 처우개선
- 해상테러 등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특수기동대원 활동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당사항 없음

※ 부산 동의대사태('89년) 이후 '90년부터 특별방법수당 지급

② 추진경위

- 최일선 근무 경찰관 대민봉사 및 민생치안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비, 함정요원의 사기진작 및 지휘, 통솔력 강화를 위한 품위유지비
- '01년 치안활동수당으로 명칭변경, 단가인상(7만원→17만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 예산작성 → 사업계획수립 → 사업집행 → 집행결과분석

사 업 명						
교육원지원 (7203-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07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교육원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교육원지원	10,836	10,555	-	11,104	-	549	5.2

4. 사업목적

- 우수 해양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운영 지원
- 교육운영 지원을 통한 교육품질의 향상 및 교육 만족도 향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경찰공무원법 제17조 교육훈련
-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6조 교육훈련실시의무
-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8조 신입·기본·전문교육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 시보임용경찰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② 추진경위

- '04. 1. 29. 해양경찰학교 직제신설 공포(대통령령 제 18260호)
- '06. 1. 신입·기본과정 교육운영 일원화(경찰종합학교→해양경찰학교 이관)
- '08 ~ 경정·경감기본교육 이관(경찰대학→해양경찰학교)
- '13. 11. 11.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의거 해양경찰교육원 신축 이전(천안→여수)
- '14. 3. 31. 해양경찰교육원 준공
- '17. 7. 26. 정보조직법 개정으로 해양경찰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해양경찰교육원)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교육계획 수립 → 교육시행 → 교육결과에 따른 집행 계획 수립 → 예산 집행

사 업 명						
정보통신보안활동 (7203-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08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정보통신보안활동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정보통신보안활동	-	-	-	586	-	586	순증

4. 사업목적

- 정보통신망에 대한 통신보안활동 강화 및 사이버침해 위해요소 탐지·제거
- 정보통신망 신형 암호장비 도입, 점검 및 보안자재 등 보안시스템 강화
- 전산취약점을 사전 점검·해소하여 중요자료 유출 예방
- 정보통신 보안교육 및 지도점검을 통한 보안의식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8조(무선통신 보안관리), 제49조(전파측정)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절 암호장비, 제3절 보안자재(암호·음어·약호자재)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무선도청 탐지), 제16조(정보보안 교육), 제40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② 추진경위

- 정보통신 보안업무 역량 강화추진으로 정보통신 보안활동 강화 및 신형 보안 시스템 지속적 도입 등 통신보안에 소요되는 경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소요판단 → 세부추진계획 작성 → 일상감사(1억이상) → 계약의뢰 → 계약체결 및 시공 → 검사 및 완공(구매완료)

사 업 명						
청사관리 (7237-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담당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7	300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시설개선	청사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청사관리	3,783	4,021	-	5,912	-	1,891	47.0

4. 사업목적

- 노후청사 개보수비 지원 및 청사 환경미화 등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 노후 집기류 구입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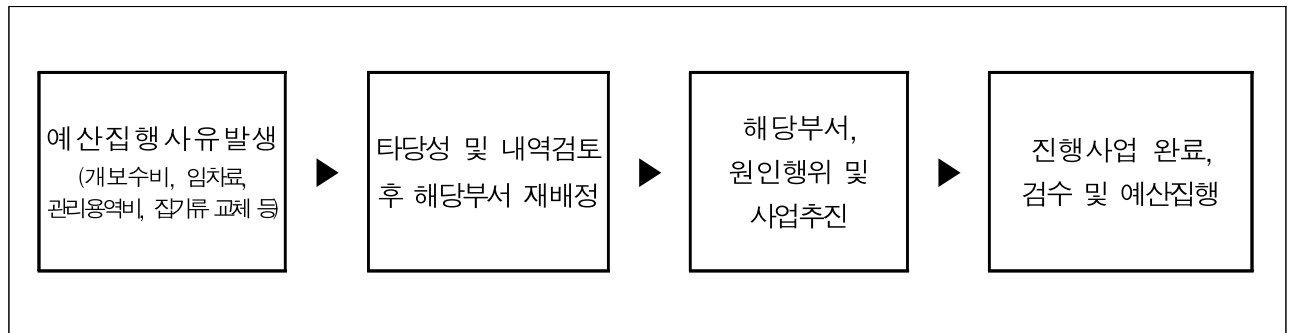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 ※ 제2조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전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추진경위 - 노후청사 개보수, 임차료 등 매년 지속적으로 소요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해양경찰정보화관리(정보화) (7238-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8	300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정보화관리	해양경찰정보화관리(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해양경찰정보화 관리(정보화)	10,388	14,572	-	13,337	-	△1,235	△8.5

4. 사업목적

- 정보화 장비 및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유지관리로 사용자 편의 증진
-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사업 도입을 통한 안정적인 행정업무 지원
- 정보통신망 기반시설의 안전한 운영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보안 활동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공공 정보화의 추진)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6조(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4조의2(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해양환경관리법 제61조(국가긴급방재계획의 수립·시행)

② 추진경위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의거 매년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시행
- 업무의 전자화 및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정보기술 아키텍처 수립
- 신기술 적용을 위한 업무고도화 및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 안전하고 성숙한 정보사회 구현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 직원 및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소요판단 → 세부추진계획 작성 → 일상감사(1억이상) → 계약의뢰
→ 계약체결 및 시공 → 검사 및 완공(구매완료)

사 업 명						
해양오염및해양경비지원기술(R&D) (7239-6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연구센터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00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해양오염및해양경비지원기술 (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해양오염및해양경비 지원기술(R&D)	8,077	10,305	-	7,248	-	△3,057	△29.7

4. 사업목적

-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양오염 현장 대응기술 및 방제현장 지원기술 개발
- 해상의 특수 여건에서 해양사고 위험성 평가·대응, 기름 및 유해화학물질의 유출·확산 및 회수를 위한 현장 대응기술 확보 등 효율적인 임무수행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 연구)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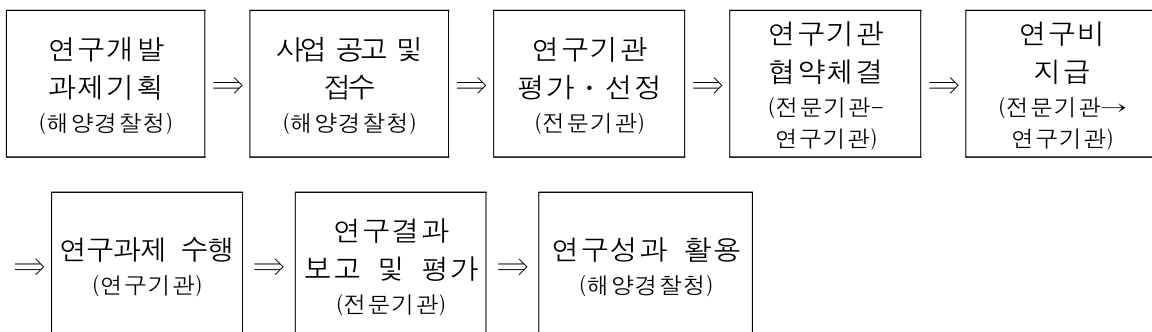
- ('14년) 해양경찰청 국가R&D사업으로 “해상치안기술연구개발(R&D)”사업 착수
- ('17년) “해양오염및해양경비지원기술(R&D)”과 “해양구조기술개발(R&D)” 2개 사업으로 분리 개편
- ('18년) 일몰사업으로 지정되어 본 사업의 계속과제 종료되는 '20년 사업 종료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4년 ~ '20년
- 사업규모 : 10개 연구개발과제 수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해양관련종사자, 전 국민, 연구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제3항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해양구조기술개발(R&D) (7239-6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연구센터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01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해양구조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해양구조기술개발 (R&D)	2,046	2,018	-	680	-	△1,338	△66.3

4. 사업목적

- 해양재난 사고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상 구조 현장 대응 기술 개발
- 해양사고 초기 인명구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구조세력을 망라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훈련이 가능한 가상훈련체계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 연구)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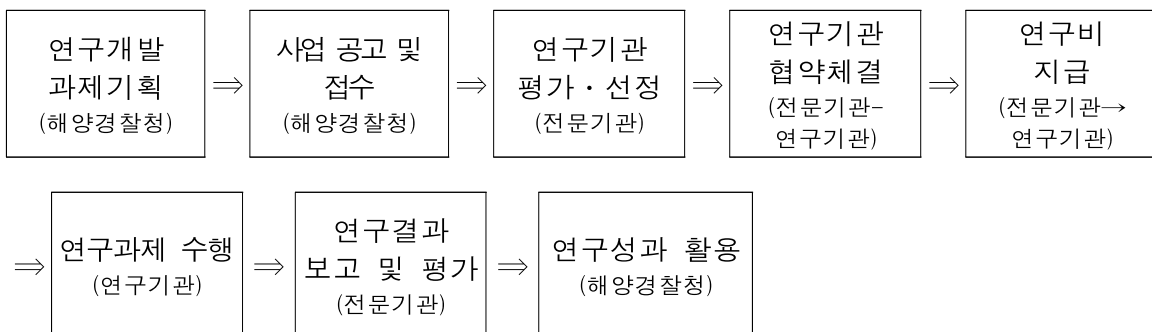
- ('14년) 해양경찰청 국가R&D사업으로 “해상치안기술연구개발(R&D)”사업 착수
- ('17년) “해양오염및해양경비지원기술(R&D)”과 “해양구조기술개발(R&D)” 2개 사업으로 분리 개편되어 신규 편성
- ('18년) 일몰사업으로 지정되어 본 사업의 계속과제 종료되는 '20년 사업 종료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7년 ~ '20년
- 사업규모 : 3개 연구개발과제 수행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해양관련종사자, 전 국민, 연구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제3항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영(R&D) (7239-6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연구센터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02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구축및운영(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국민안전감시및대응 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 구축및운영(R&D)	880	1,261	-	982	-	△ 279	△ 22.1

* 상기 예산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5부처 중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임

4. 사업목적

- 재난 현장에서 운용 가능한 재난·치안 임무용 무인기 기체 및 운항에 필요한 통신수단, 안전운항 핵심기술, 무인기 운용 및 관리 체계 개발로 국민안전 제고
- ※ 다부처 공동으로 협업을 통해 재난·치안 대응용 무인기 및 특화임무장비 개발·활용
(참여부처 : 해양경찰청, 소방청,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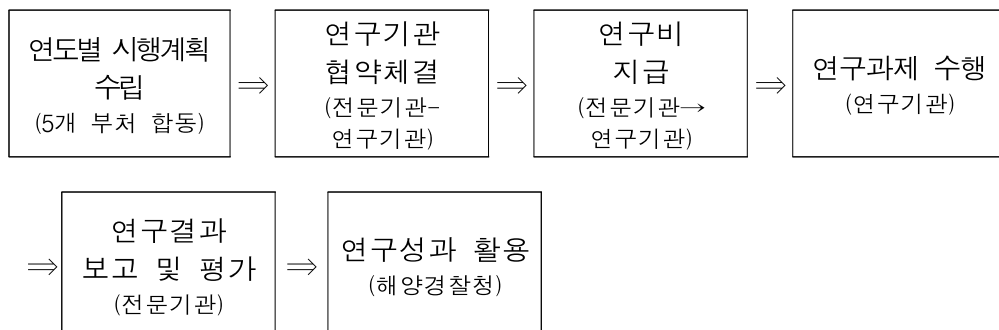
- '14. 12. 16 : 과학기술 활용 효과적인 재난대응 (제1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14. 12. 23 : 재난대응 과학기술 역할 강화 3개년 실천전략 (제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15. 3. 13 : 사전기획연구 대상 사업 선정 (제7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 '15. 5. 29 : 공동기획연구과제 선정 (제8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 '15. 10. 2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선정 (제9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 '17. 4. 12 : '17년도 시행계획 확정 (제1회 사업추진위원회)
- '17. 6. ~ : 연구기관 선정 및 연구 수행
- '17. 7. 26 : 정부조직법 개정(해양경찰청 독립)에 따른 '18년 예산부터 국민안전처에서 사업 분리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7년 ~ '20년
- 사업규모 : 1개 연구개발과제 수행(해양경찰청)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주관) 소방청, (참여) 산업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해경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해양관련종사자, 국민, 연구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0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제3항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골든타임사수를위한수색구조기술개발(R&D) (7239-6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연구센터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11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골든타임사수를위한수색 구조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골든타임사수를위한 수색구조기술개발 (R&D)	-	-	-	1,672	-	1,672	순증

4. 사업목적

- 해양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대응으로 골든타임을 사수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 개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 연구)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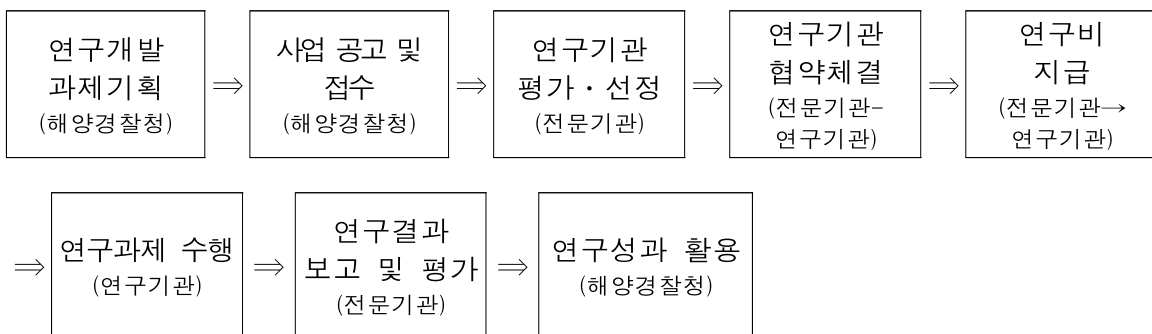
- “해양구조기술개발(R&D)” 일몰사업 지정(‘18년 일몰)
- “해양경찰청 R&D중장기 전략수립 기획연구”를 통한 신규사업 추진전략 마련(‘18.1)
- “해양구조기술개발(R&D)”의 일몰 후속 사업으로 신규사업 반영(‘19년~)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년 ~ ‘23년
- 사업규모 : 2개 내역사업 4개 연구개발과제 수행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해양관련종사자, 전 국민, 연구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제3항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불법선박대응을위한장비선진화기술개발(R&D) (7239-6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연구센터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12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불법선박대응을위한장비 선진화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불법선박대응을위한 장비선진화기술개발 (R&D)	-	-	-	2,266	-	2,266	순증

4. 사업목적

- 불법선박의 저항 시 효과적인 대응기술 개발을 통한 해상치안기관의 공권력 확립
- 해양범죄에 대한 과학적 증거수집능력 확보를 통한 해양특화 수사기법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 해양경비법 제3조(국가의 책무)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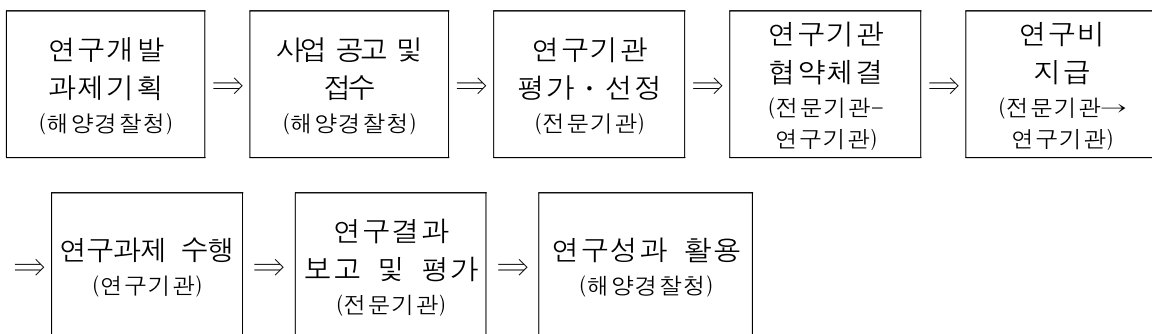
- “해양오염및해양경비지원기술(R&D)” 일몰사업 지정(‘18년 일몰)
- “해양경찰청 R&D중장기 전략수립 기획연구”를 통한 신규사업 추진전략 마련(‘18.1)
- “해양오염및해양경비지원기술(R&D)”의 일몰 후속 사업으로 신규사업 반영(‘19년~)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년 ~ ‘23년
- 사업규모 : 2개 내역사업 4개 연구개발과제 수행
- 사업시행방법 : 출연, 직접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해양관련종사자, 전 국민, 연구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제3항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방제단계별대응역량강화기술개발(R&D) (7239-61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연구센터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13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방제단계별대응역량강화 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방제단계별대응역량 강화기술개발(R&D)	-	-	-	1,100	-	1,100	순증

4. 사업목적

- 해난선박 발생시 사고선박에 대한 긴급조치, 해안 특성별 효율적 기름 회수로 오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제 대응역량 강화 기술 개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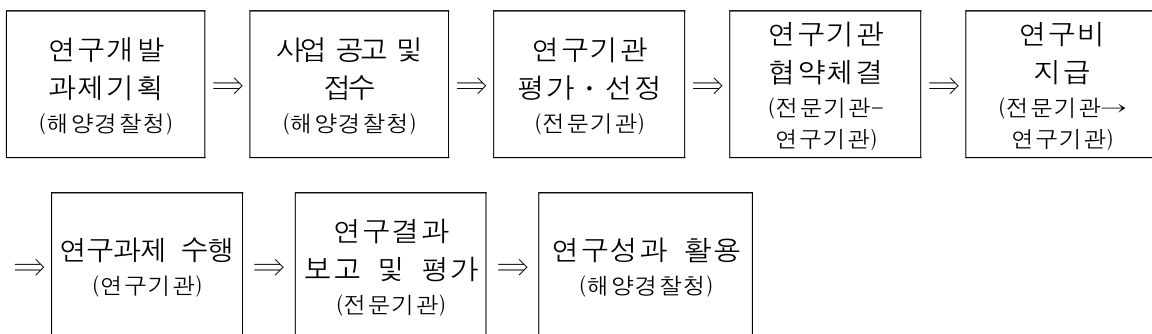
- “해양오염및해양경비지원기술(R&D)” 일몰사업 지정(‘18년 일몰)
- “해양경찰청 R&D중장기 전략수립 기획연구”를 통한 신규사업 추진전략 마련(‘18.1)
- “해양오염및해양경비지원기술(R&D)”의 일몰 후속 사업으로 신규사업 반영(‘19년~)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년 ~ ‘23년
- 사업규모 : 2개 내역사업 2개 연구개발과제 수행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해양관련종사자, 전국민, 연구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제3항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무인항공기기반해양안전및수산생태계관리기술개발(R&D) (7239-61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연구센터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14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무인항공기기반해양안전및 수산생태계관리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무인항공기기반해양 안전및수산생태계 관리기술개발(R&D)	-	-	-	3,283	-	3,283	순증

4. 사업목적

- 고기능 다목적 중형 무인기를 이용한 해양수산재난 신속대응, 어업관리, 해양수산생태계관리 및 해상 재난감지, 예측 및 재난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다부처(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협업사업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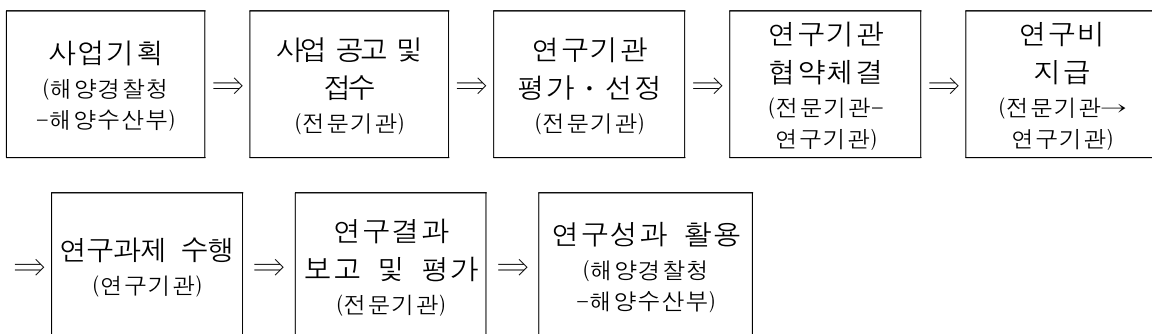
- “어군탐지용 드론 개발 기획연구”을 통해 해양수산분야에서 고성능 무인기의 다목적 활용성 제시(‘17년)
-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협업사업으로 기획(‘18년), 신규사업으로 반영(‘19년~)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년 ~ ‘22년
- 사업규모 : 2개 내역사업 2개 연구개발과제 수행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해양관련종사자, 전 국민, 연구기관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제3항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정책연구개발(R&D) (7239-6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239	650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정책연구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정책연구개발(R&D)	144	190	-	184	-	△6	△3.2

4. 사업목적

- 신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 해양경찰청 현안업무 관련 연구용역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7. 7. 26 : 정부조직법 개정(해양경찰청 신설)에 따른 '18년 예산부터 국민안전처에서 사업 분리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7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대학교, 연구기관, 기업 등

7. 사업 집행절차

- 과제선정→연구자선정→계약체결→중간보고→연구완료→예산지급→정책활용

사 업 명						
해양오염예방활동 (433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070	075
명칭					환경	해양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33	300
명칭	해양오염관리	해양오염방제	해양오염예방활동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해양오염예방활동	5,421	5,915	-	5,494	-	△421	△7.1

4. 사업목적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및 방제기자재 확충을 통한 국가방제 역량 제고
- 방제훈련을 통한 해양오염사고 현장대응력 강화 및 신속한 방제조치 시행
- 주 오염원인 선박·해양시설 지도점검으로 재난적 해양오염사고 사전 예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43조의 2항(해양에서의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
- 해양환경관리법 제61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 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출입검사·보고 등)
-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신고포상금)
- OPRC협약(기름오염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발효('00.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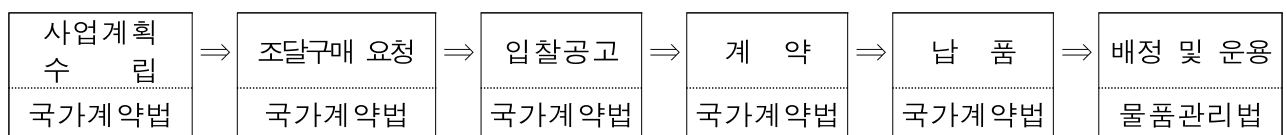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00. 1월, 국가방제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 '00. 2월, OPRC협약(기름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발효
- '08. 7월, 국무총리실 특정과제 이행계획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 개선”
- '09. 4월,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시행
- '14. 11월, 국민안전처(舊 해양경찰청) 조직 변경
- '17. 7월, 해양경찰청 조직변경, 해양오염방제를 총괄지휘하고 지자체 해안방제 조치 시에 방제장비·자재를 지원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 관련 종사자를 포함함 모든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해양화학사고대응역량강화 (433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4200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070	075
명칭	일반회계				환경	해양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33	301
명칭	해양오염관리	해양오염방제	해양화학사고대응역량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해양화학사고 대응역량강화	576	552	-	520	-	△32	△5.8

4. 사업목적

- 해상 유해화학물질(HNS) 오염사고로 인한 오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효율적인 대비·대응체제 구축

* HNS :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벤젠, 암모니아, 황산, 질산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제43조(해양수산부) 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 61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①국민안전처장관은 총리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우려가 있거나 배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④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할 수 있다.
- OPRC-HNS 의정서(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사고의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4조(국가 및 지역 대비·대응체제 구축) 및 제6조(오염 대비·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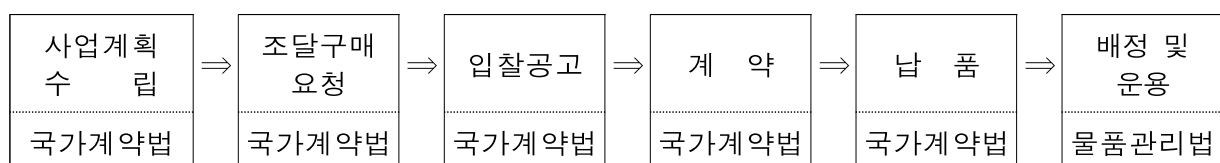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06.12월, HNS 국가/지역 방제계획 수립·시행(국가 및 3개 해역)
- '07.12월, HNS 지역방제계획 수립·시행(5개 해역)
- '08. 1월, OPRC-HNS 의정서 가입, 국내발효('08. 4. 11)
- '08. 4월,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하는 HNS 지정 고시(68종)
- '08.12월, HNS 국가/지역방제계획 수립 완료('06년~'08년, 13해역)
- '09. 4월, 국가방제기본계획에 HNS 포함 개정
- '13.12월, 화학물질운반선(Maritime Maise호) 화재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능력 강화 필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방제정건조 (4334-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070	075
명칭					환경	해양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34	300
명칭	해양오염관리	방제정건조	방제정건조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방제정건조	23,734	15,470	-	7,441	-	△8,029	△51.9

4. 사업목적

- 기름 및 해상화학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유회수기, 오일펜스 등 방제장비를 탑재한 방제 전용선박 건조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43조의 2항(해양에서의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
- 해양환경관리법 제61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 OPRC협약(기름오염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발효('00. 2월)

② 추진경위

- '97년, '국가방제제도개선 및 방제능력 확충방안 연구'를 통하여 국가방제능력 확보목표를 2만톤으로 설정
- '07년, 해양오염 국가방제능력 확충계획 보완
- '08년, 총리실 주관,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 평가시 개선과제로 대형 방제정 필요성 제기
- '12년, 해상기름 회수 목표량을 총 22,500kℓ로 설정(동·서·남 3개 해역 각 7,500kℓ)
- '14년, 우이산호 오염사고 시 제기된 방제정 부족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유류방제정 확보
- '15년, '13년 마리타임메이지호(케미컬선, 29,211톤) 충돌·화재 발생 시 화학방제정이 없어 현장 진입 및 화재 진압 실패에 따라 전용 대응 도입 추진
- '16년 '해양오염방제장비 중장기 확보계획' 수립, 방제정 확보 목표 정립
 - ※ 해역별 위험도 평가를 통해 해역별 1~2척 배치
- '17년 '방제장비 및 자재 확보계획' 수립
 - ※ 화학 방제정 2척, 유류방제정 6척(신조 3, 노후대체 3) 건조 추진
- 선령 20년이 경과된 노후 방제정 교체로 선박 안전성 확보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 관련 종사자를 포함함 모든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편성 → 건조계획 수립 → 조달계약(조달청) → 건조 → 인수 및 배치